

##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1. 장기추적조사 계획 접수기관을 규제과학센터로 변경(안 제32조 제2항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과학센터로 이원화 되어 절차적 효율화 요구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장기추적조사 계획의 접수 기관을 식약처장에서 → 규제과학센터로 변경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접수·처리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도모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